**동반성장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가이드라인**

**제1조 (목적)**

본 가이드라인은 한솔테크닉스(이하 ‘당사’)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, 하도급법 위반사항을 사전에 예방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**제2조 (용어의 정의)**

동반성장 심의 위원회 : 협력회사가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강한 협력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동반성장 관련 주요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심의하는 회의체로 운영 한다.

**제3조 (구성)**

[별첨] 동반성장 심의위원회 조직도

**제4조 (책임과 권한)**

1. 심의위원장 : 심의위원회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2. 간사 : 정기회의 안건, 내용, 결과 등을 심의위원장에게 보고 및 심의위원에게 통보하며, 임시회의가 필요할 경우 임시회의 소집을 주관한다.
3. 심의위원 : 안건의 투명,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및 결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
**제5조 (회의소집)**

1. 심의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.
2. 정기회의 : 매월 1회 동반성장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한다.
3. 임시회의 : 긴급 의사결정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.
4. 심의위원들이 간사에게 심의위원회 소집을 발의하거나, 또는 심의위원들이 직접 소집할 수 있다.
5. 심의위원들은 회의 전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.

**제6조 (의사의 진행)**

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고,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, 관련 된 회의결과에 대하여 사후관리 한다.

**제7조 (심의 및 논의내용)**

1. 협력회사 지원 실적 공유
2. 협력회사 만족도 조사 현황 공유
3. 하도급거래 심의
4. 동반성장 관련 업무규정 및 Process 심의
5. 동반성장 추진대상 협력회사 범위
6. 협력회사 주요 선정 기준(평가)
7. 기타 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

**제8조 (의결 방법)**

심의위원회 의결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준한다.

**제9조 (기록관리)**

1. 회의시 논의 및 의결된 사항 또는 심의위원장 지시사항은 간사가 기록/관리 한다.
2. 기록된 내용은 간사가 각 심의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행토록 요구한다.
3. 회의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한다.

[별첨]

|  |  |
| --- | --- |
| 조 직 | 주요 업무 |
| 심의 위원장 | 전략혁신 담당박인래 | 동반성장 관련 제반 업무 총괄 |
| 간사 | 황태환 책임 | 공정거래위윈회 담당* 협약신청, 이행계획 및 실적 등록,

평가관리 등 |
| 사내공정거래담당자 | 최종익 수석 | 동반성장위원회 담당* 이행계획 및 실적 등록, 성과공유 과제

관리, 평가 관리 |
| 심의위원 | 김영삼 팀장(구매) | 하도급 계약체결 공정성 관리하도급 거래 실천사항 준수불공정 거래 방지 |
| 김진석 팀장(지원) | 공정거래 관련 홈페이지 관리대급 지급조건 개선관리 |
| 채유신 팀장(인사) | 공정거래 실천사항 관리하도급 거래 심의 |
| 연제진 수석(총무) |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관리온실가스 감축 관리 |